

무주택 서약서

※ 뒤쪽의 설명을 읽고 () 괄호안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앞쪽)

※ 특별공급 신청 시에만 작성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허위 기재로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향후 군인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군인공제회 주택공급 시 1, 2차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군 번 :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마.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일 경우